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2019년 개정) FAQ
(2019. 11.)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

1.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거나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는 모든 상황에서 실무지침 2017-1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실무지침 2017-1은 문단 3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a) 감사인이 변경됨

(b)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c) 회사가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였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함

-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비교재무제표 수정

○ 따라서 다음 각각의 상황은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거나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더라도 이 실무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사인이 변경되지 않음
- 전기 감사의견 변형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한 경우. 예를 들어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이 실무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위의 예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재감사를 수행할 때에 이 실무지침을 근거로 제3의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 이 실무지침은 문단 3의 (a)에서 (c)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
 -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재감사의 경우에는 이 실무지침을 근거로 제3의 감사인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문단 5 참조).

3.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도 당기감사인이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당기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실무지침 문단 7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에는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 절차 등 실무지침 문단 9-18, 32, 34만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에는 3자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문단 19-23)과 당기감사인의 강조사항 문단 기재(문단 25)는 요구되지 않습니다.